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AllianzGI Safe 신종 MMF G-1 호 수익증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llianzGI Safe 신종 MMF G-1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AllianzGI Safe 신종 MMF G-1 호

2. 자산운용회사명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TEL) 2071-9900

3. 판 매 회 사 명 : 하나은행 TEL) 1599-1111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4년 03월 10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 주소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알리안츠글로벌
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홈페이지 www.allianzgi.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AllianzGI Safe 신종 MMF G-1 호
- 2. 신탁계약기간 추가형임으로 별도 종료일 없음
- 3. 종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추가형, 개방형, 개인용
- 4. 자산운용회사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안정적인 국공채와 우량회사채, 어음, 금융기관간 단기대출 등 주로 신탁재산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약관이 허용하는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이내의 우량자산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달성을 추구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단기 채권과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함에 따라 투자자는 금리등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및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채권 및 어음등에의 투자는 만기 및 신용등급이 제한됨에 따라 5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정도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적 자금 운용과 단기금리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실지명의로의 개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합니다.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allianzqi.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2014.02.28 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정철	72년생	이사	15개	8,504억	고려대 경영학, KAIST 금융공학 대학원,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경력 15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 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연평균수익률) **아닙니다.**

연도	최근 1년차 (13.03.01~14.02.28)	최근 2년차 (12.03.01~14.02.28)	최근 3년차 (11.03.01~14.02.28)	최근 4년차 (10.03.01~14.02.28)	최근 5년차 (09.03.01~14.02.28)
투자신탁	2.16%	2.43%	2.58%	2.32%	2.26%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08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0.300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 0.020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15	매 3개월
	보수합계	연 0.420	
	기타비용 ¹⁾	연 0.003	
	총 보수·비용 비율 ²⁾	연 0.423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추정 비용임

주2) 총 보수·비용 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2. 과세

수익자는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14.03 현재 개인15.4%, 법인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 본문참조

3. 매입·환매

절차 등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분~오후 시 분)에만 가능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D, D+1,</p> <p>자금납입 (5시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적용)</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D, D+1, D+2</p> <p>자금납입 (5시경과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적용)</p>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2 영업일(D+1)에 환매대금을 지급</p> <p>D, D+1,</p> <p>환매청구 (5시이전)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3 영업일(D+2)에 환매대금을 지급</p> <p>D, D+1, D+2</p> <p>환매청구 (5시경과후)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지급)</p>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성명)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 본 문 >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AllianzGI Safe 신종 MMF G-1 호
2. 신탁계약기간 무기한
3. 종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추가형, 개방형, 개인용
4. 자산운용회사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 및 연혁 2003. 5. 20 투자신탁 설정
 2004. 7.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으로의 변경
 2005. 8. 19 회사명 명칭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2007. 3. 22 미래가격제로 변경
 2008. 12. 22 정기 갱신
 2011. 01. 12 정기 갱신
 2014. 03. 14 책임운용인력의 변경

6. 수탁고 추이

(단위: 억좌,%)

	현재 2014.02.28	6개월전 2013.08.31	1년전 2013.02.28	1년 6개월전 2012.08.31	2년전 2012.02.28	2년 6개월전 2011.08.31	3년전 2011.02.28
수탁고 금액	11.1	11.6	13.5	13.8	14.3	16.8	18.9
수탁고증가율 ^{주)}	-4.3%	-14.1%	-2.2%	-3.5%	-14.9%	-11.1%	-26.5%

주)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안정적인 국공채와 우량회사채, 어음, 금융기관간 단기대출 등 주로 신탁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약관이 허용하는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이내의 우량자산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달성을 추구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단기 채권과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함에 따라 투자자는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및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채권 및 어음등에의 투자는 만기 및 신용등급이 제한됨에 따라 5 등급 중 5 등급(아래 표 참조)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정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적 자금 운용과 단기금리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실지명의로의 개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자등급 안내>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30~60% 투자하는 경우
3 등급	중간위험	주식에 30%이하 투자 또는 투자적격등급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4 등급	낮은 위험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채권 및 어음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 등)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주기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판매회사의 영업개시 시간 전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allianzgi.co.kr)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영현황(2014.02.28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정철	72년생	이사	15개	8,504억	고려대 경영학, KAIST 금융공학 대학원,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경력 15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 1년차 (13.03.01~14.02.28)	최근 2년차 (12.03.01~13.02.28)	최근 3년차 (11.03.01~12.02.29)	최근 4년차 (10.03.01~11.02.28)	최근 5년차 (09.03.01~10.02.28)
수익률	2.15%	2.69%	2.89%	1.90%	1.65%

나. 연평균 수익률

연도	최근 1년차 (13.03.01~14.02.28)	최근 2년차 (12.03.01~14.02.28)	최근 3년차 (11.03.01~14.02.28)	최근 4년차 (10.03.01~14.02.28)	최근 5년차 (09.03.01~14.02.28)
수익률	2.16%	2.43%	2.58%	2.32%	2.26%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없음	
합계	-	

2. 투자신탁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850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분의 3.000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200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150	매 3개월
기타비용 ¹⁾	연 1,000분의 0.0030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000분의 4.230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만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13.3	23.3	53.2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 하지만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세법의 변경 및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17시 이전(오후 5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7시경과 후(오후 5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간접투자증권 매입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5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절차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2영업일**에 지급.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3영업일**에 지급.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5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환매수수료 없음
- 환매대금의 지급 환매대금은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금 지급 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시효등 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나.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약관이 허용하는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이내의 우량자산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달성을 추구합니다.

-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통하여 타 채권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
- 투자증권 등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의 엄격한 제한
- 안정적인 국공채 및 우량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중심의 자산운용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최소화
- 수시 입출금식 MMF 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률 취득을 목적으로 단기채권등에 운용
- 빈번한 입출금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부분을 일정부분 운용하되, 단기 국공채, 채권 및 CD 등의 투자를 통해 운용수익률 제고

※ 상기의 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이 보유한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권과 어음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으로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p>있습니다.</p> <p>채권 및 어음 발행사의 부도, 파산,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 및 환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p>
시가과리 위험	<p>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p>
기타위험	<p>그 밖에도 환매청구시와 환매일의 순자산가치변동위험 및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규모가 적을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p> <p>금융시장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충격여파로 금융시장이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자의 환매가 일시에 발생하는데서 오는 유동성위기(Fund Run)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미국 해외계좌의 무납세법 (FATCA) 및 미국 납세의무자 (US Taxpayers)	<p>미국 해외계좌의 무납세법(FATCA)</p> <p>미국 해외계좌의 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p>

	<p>(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p> <p>"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 입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p>
--	--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①	채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②	어음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③	수익증권등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법에 의해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신탁약관을 변경한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익증권을 포함한다)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5% 이하 투자
④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투자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총액의 5%이내
⑤	수탁회사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⑥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6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⑦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등급	<p>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최상위등급과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그리고,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이내로 한정.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투자증권 -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투자증권으로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p>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p>

		다.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여 편입된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⑧	잔존만기등	- 개별 채권 및 어음의 잔존만기는 1년 이내 - 투자신탁의 가중평균만기는 90일 이내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예외
동일종목 투자	투자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종목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나.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 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파생상품 투자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투자하는 행위	

주식 및 외화자산 등 투자	가.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다.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라.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한 주식예탁증서 마.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바. 자산유동화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사. 외국수익증권 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차. 외화로 표시된 자산	
구조화된 자산투자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후순위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1	동일종목 투자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제외)의 합계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기타 2	가. 단기금융투자신탁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간접 투자 증권 나.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다. 투자증권 대여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부분 해당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	--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계산시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가(취득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취득가액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allianzgi.co.kr)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 ✓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 ✓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 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알리안츠생명빌딩 18 층 02-2071-9900
회사연혁	2000.12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1. 1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1. 3 영업 개시
2005.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사명변경

2. 주요 업무
- 의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
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
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
니다.

-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단위:백만원)

3. 최근 2개 사업
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3.3.31	2012.3.31	계정과목	2013.3.31	2012.3.31
현금및예치금	412	421	영업수익	364	424
유가증권	4	4	영업비용	213	206
파생상품	0	2	영업이익	151	218
유형자산	5	6	영업외수익	0	0
기타자산	89	101	영업외비용	1	7
자산총계	510	534			
예수부채	3	5			
기타부채	90	107			
부채총계	93	112	법인세차감전 이익	150	211
자본금	200	200	법인세비용	35	52
이익잉여금	217	221	당기순이익	115	159
자본총계	417	421	총포괄이익	115	159

4. 운용자산 규모
(14년 02월 28일)
(순자산기준, 단위: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	MMF	재간접	투자일임	총계
12,671	1,494	7,692	878	11	1,677	167,125	191,54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4년 02월 28일)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정철	72년생	이사	15개	8,504억	고려대 경영학, KAIS 금융공학 대학원,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경력 15년

- ※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인은 채권운용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회사 또는 투자신탁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T. 1599-1111	1991. 7 은행업무개시 1999. 1 보람은행과 합병 2002. 2 서울은행과 통합

2. 주요 업무

-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판매행위
준칙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나.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다.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라.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회사명	홈페이지
하나은행	www.hanabank.com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T. 02-2073-7114
회사연혁	2001. 11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T. 02-729-8402
회사연혁	설립일: 2003년 4월 1일, 자본금: 25.5억원

2. 주요 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	----------	------

KIS채권 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 02-3215-1450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한국자산 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설립일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나이스 채권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02-398-3900	설립일 : 2000. 6. 16 자본금 : 47.5억원
에프엔자산 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태화 빌딩 4층 ☎ 02-721-5300	설립일 : 2011.06.09 자본금 : 50억원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의결사항
- ①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의결권
-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④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⑤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②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집주체 및
통지

- ①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①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③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니다.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②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기준가격계산서
 -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③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자산운용회사가 매월 1회이상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수탁회사가 수탁회사, 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 약관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가. 수탁회사의 변경
- 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다.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라.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마.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allianzgi.co.kr)·판매회사(판매회사 개요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니다.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라.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마.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아.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스왑	스왑거래란 장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일정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대상이 상품인 경우를 상품(commodity)스왑이라 하고

	금융자산 또는 부채인 경우를 금융(financial) 스왑 이라 한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 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판 매 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